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4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확대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의 소급적용(김상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태호의원안)	3

I. 개요

1.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23.
- (3) 회 부 일 : 2024. 7.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임.

한편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종전에는 5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이었으나 2021년 말 현행법 개정으로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상한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당시 개정법률은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법률 제18591호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기간 상한이 여전히 5년으로 적용되고 있음.

다만,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의 기간 설정에 대해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납세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부연납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71조제6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확대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의 소급적용(김상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연부연납(제71조) ○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1. 가업상속: 20년, 10년 거치 후 10년 2. 일반상속: 10년 * 2021년 12월 31일 이전: 5년 <u><신 설></u>	☐ 적용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1일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 가능(김상훈의원안) - 연부연납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당초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적용례(법률 제18591호 부칙) ○ <u><신 설></u>	○ 일반상속의 연부연납 기간 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인 경우에도 적용(정태호의원안) ○ 일반상속의 연부연납 기간 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부칙 개정일 이전 기 납부할 상속세액을 제외하고 향후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적용(박수민의원안)
☐ 경과조치(법률 제19195호 부칙 제9조)	☐ 경과조치 단서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단서 신설>	○ (현행과 같음) ○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기간 규정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되,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로 한정(정태호의원안) ○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기간 규정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칙 개정일 이전 기 납부한 상속세액을 제외한 향후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되,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로 한정(박수민의원안)

* 김상훈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42), 박수민의원안 2024. 10. 7. 발의(의안번호 4590), 정태호의원안 2024. 10. 31. 발의(의안번호 5105)

□ 3건의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¹⁾이 각 법률의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안은 현행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확대된 일반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같은 법 시행일 전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당초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박수민의원안과 정태호의원안은 기(既) 시행 중인 법률의 부칙을

1) 일반상속은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확대

각각 개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된 일반상속과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이 각 법률의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안은 기(既) 납부한 상속세액을 제외한 향후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만 연부연납을 적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연부연납제도’는 일시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금을 일정기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동 제도는 상속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²⁾.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대법원 91누9374, 1992. 4. 10.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상속 및 가업상속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1년과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일반상속은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각각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개정 경과]

기 간	일반상속	가업상속 ³⁾		
		50% 미만	50% 이상	
1997~2000	3년	5년	7년	
2001~2003			10년	
2004~2007			15년	
2008~2017	5년	7년	20년	
2018~2021		10년		
2022	10년	20년		
2023				

기 시행 중인 각 법률에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확대 개정된 연부연납 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2021년, 2022년 연부연납 기간 관련 상증법 개정사항 및 부칙]

구분	연부연납 기간 개정사항	연부연납 관련 부칙
법률 제18591호 (2022. 1. 1. 시행)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 5년 → 10년: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u>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u> ※연부연납 적용례(경과조치) 미규정
법률 제19195호 (2023. 1. 1. 시행)	가업상속(가업상속 재산 비율 50%이하) 연부연납 기간: 15년 → 20년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3) 가업상속의 경우 그간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달리 하였으나, 2022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으로 확대되었음.

구분	연부연납 기간 개정사항	연부연납 관련 부칙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로, 개정안의 주요 적용대상은 일반상속의 경우 '22년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중인 6,763명에 대하여, 가업상속은 '23년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중 일부(가업상속비율이 50%이하, 상속세가 2천억원 미만)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⁴⁾.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

(2024. 2. 기준, 단위: 명, 억원)

합계		일반 상속				가업 상속			
		'21.12.31. 이전		'22.1.1. 이후		'22.12.31. 이전		'23.1.1. 이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2,346	211,019	6,763	160,562	5,243	43,722	338	6,718	2	17

※ 자료: 국세청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세율 인상 등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의 경우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둘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 적용하더라도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한

4) 기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일시납부한 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연부연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가업상속은 가업상속 재산비율 50%인 경우, 상속세가 2천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나, 이에 대한 구분된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추계가 어려움.

가산금⁵⁾을 부과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세수감소 효과가 미미한 반면⁶⁾, 보다 많은 상속자가 확대된 납세 기한 편의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셋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적 사건에 기인하여 개시 되는데, 상속개시 시점이 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에 과도한 차이(5년)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급적용의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2021년 상증세법 개정 시의 입법자의 판단과 기존에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 시 소급적용하는 부칙을 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부연납 관련 부칙 입법례]

구분	연부연납 관련 부칙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제10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6301호,	제6조 (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6)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과 실제 시중금리의 차이로 인한 세수 차이는 일부 발생할 수 있음.

구분	연부연납 관련 부칙
2000. 12. 29.	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7010호, 2003. 12. 30.	제11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제8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둘째, 연부연납 중이거나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의 확대를 허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분납을 완료한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가 있으며, 연부연납 기간의 변경, 납부한 세금의 환급 등에 필요한 신청 절차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적지 않은 행정적 부담이 예상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